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건설국) ①(생 략)          ②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생 략)  <u>(신 설)</u></p> <p>6.(생 략)          ③~⑤(생 략)</p>	<p>제10조(건설국)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1.~5.(현행과 같음)  <u>6.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u>  <u>7.(현행 제6호와 같음)</u>          ③~⑤(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6. 7. 13.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년 7월 4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6년 7월 4일

다. 상정일자: 제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6. 7. 10.) 상정, 심사, 보류  
제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6. 7. 13.) 재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과장 문엽승

#### 가.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산업과에 가스계를 신설하며, 저소득층 재가노인복지률 도모하기 위한 서울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 장애인 복지업무를 확대코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계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 나. 주요개정골자

○ 구본청 정원의 총수 "910명"을 "938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 동 정원의 총수 "487명"을 19명 감원하여 "468명"으로 함(안 제2조제3호)

###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910명의 구본청 정원을 28명 증원하고 487명의 동사무소 정원을 19명 감원하려는 것임.

○ 순수 증원되는 인원은 각종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되는 안전지도계에 계장요원을 포함한 4명과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인하여 산업과에 신설되는 가스계에 계장요원을 포함한 2명, 도심재개발사업 업무일부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정비과에 신설되는 도시개발계장요원 1명과 노인복지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가정도우미요원 1명이 배치되는 등 총 9명이 순수 증원되는 것임.

○ 나머지 19명의 증원내용은 동사무소업무 중 쓰레기봉투판매 방법을 구청에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주차단속업무도 구청에서 전담 또는 주차단속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등 동 업무량이 감축됨에 따라 19명의 동 인력을 구본청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마포구에 들 수 있는 총 정원은 1,411명이나 현재 마포구 총 공무원수는 방범원 135명을 포함하여 구본청 910명, 의회사무국 29명, 보건소 76명, 동 487명 등 총 1,502명이나 방범원은 총 정원에서 제외되므로 마포구의 현재 정원은 1,367명이 되겠으며, 따라서 앞으로 충원할 수 있는 여유 정원은 44명이 됨.

○ 현재 5국 3실 24과 84계로 설치되어

있는 구본청의 행정기구를 앞으로는 5국 3실 24과 87계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직의 전문화와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과 전문성 결여 등의 폐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제

14조('95. 5. 16. 대통령령 제 14480호)로 보면 우리구 정원에 44명의 여유 인력이 있는데 굳이 동 정원을 감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인구비례에 의한 현재 우리 구의 동 정원을 보면 타구에 비해 42명이 더 많으며, 구청업무의 업무량증가 및 직제개편으로 동 정원을 감원하여 신설업무분야에 충원코자 함.

○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각동에서 취급하던 쓰레기봉투판매업무를 구청에서 일괄판매, 관리하려는 것은 동주민불편을 고려치 않는 제도가 아닌가?

○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동 청소담당은 봉투판매 외에 무단투기단속 등을 위해 찾은 출장으로 봉투판매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시민봉사실 건축물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는 데 현재 지적과 토지관리계와 통합, 1개의 계로 개편하면 민원감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건축물관리업무는 현재 시민봉사실 민원처리계에서 처리하던 업무로 토지관리계와 건축물관리업무를 통합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하게 되며 민

원처리계의 주 업무가 건축물관리업무로 결국 민원처리계가 건축물관리계로 명칭이 바뀌어 이관하는 것임.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구 본청 정원 910명과 동 정원 487명 중에는 기능직 정원도 포함되는가?

○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기능직도 포함됨.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동 정원에서 감원되는 19명의 공무원의 배치계획은?

○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신설계와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배치할 계획임.

○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쓰레기봉투를 동에서 판매하던 것을 구에서 판매도록 하려는 것의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청소담당은 쓰레기봉투판매, 투기단속 등 업무량이 과중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제도개선 차원에서 구에서 총괄관리하는 효율적임.

○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계획인가?

○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차량 3대를 이용, 각 노선별로 순회 배달할 계획임.

○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보관창고설치에 따른 예산은 얼마인가?

○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금번 추경에 3,600만원을 편성함.

○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가?

○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청소담당이 투기단속 등 찾은 출장으로 쓰레기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2회 정도의 날짜를 정해 판매하는 등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가?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는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등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구에서 일괄 판매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5. 토론요지: 수정(안)가 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96. 7. 13. 채재선 위원회 1인

나. 수정이유: 구본청 정원과 동 정원의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안 제2조제1호중 "938명"을 "937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468명"을 "469명"으로 수정

7. 심사결과: 수정(안)가 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사항: 수정(안) 별첨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1996. 7. 13.

제안자: 총무재무위원회

####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중 불합리한 구본청 정원과 동 정원을 수정조정함.

#### 2. 주요수정골자

○안 제2조제1호중 "938명"을 "937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468명"을 "469명"으로 함.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중 "938명"을 "937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468명"을 "469명"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마포구의 본청·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제2조(정원의 총수) ..... ..... .....
1. 구본청(구청): 910명	1. ....: 938명	1. ....: 937명
2. 생략	2.(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동 : 487명	3. ....: 468명	3. ....: 469명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제출일자: 1996. 7. 4.  
제출자: 마포구청장

복지과에 노인복지계, 장애인 복지업무를 확대코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계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 2. 주요개정골자

○구본청 정원의 총수 "910명"을 28명 증원하여 "938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동 정원의 총수 "487명"을 19명 감안하여 "468명"으로 함(안 제2조제3호)

####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제103조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산업과에 가스계를 신설하며, 저소득층 재가노인복지자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가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1995. 12. 28. 대통령령 제14,841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1호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및 기타 참고사항

○ 예산조치필요성 여부: 필요

첨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910명”을 “938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487명”을 “468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마포구의 본청·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구 본 청(구청): 910명	1. .... : 938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동 : 487명	3. .... : 468명

###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7. 11.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6년 6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3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6. 7. 11.)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부과과장 김재형

##### 가.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동 조례중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개정골자

○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규정하였던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이 삭제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66조제3항에 근거하여 동 조합의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8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안 제21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조합의 중앙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 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었던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의 규정이 '95. 12. 6. 삭제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66조203항에 근거한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안 제19조제1항과 안 제28조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 안 제21조제2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